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86

발의연월일: 2025. 3. 13.

발 의 자:백선희·윤종군·이건태

강경숙 · 김한규 · 서왕진

정춘생 · 김재원 · 박균택

이춘석 · 신장식 · 이수진

박은정 · 송기헌 · 황운하

위성곤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기 운항기술에 관한 현행법령 및 관련 기준은 항공기의 동력장 치 손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동력원 등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미 대부분의 항공기에는 비행자료기록을 유지하기 위한보조동력장치가 장착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형식증명서가제출되거나 감항증명을 최초로 발급받은 항공기에는 조종실음성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대체전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12·29여객기참사에 대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 충돌 직전 4분여간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으며, 특히 사고 여객기의 경우 2009년 9월 제작되어 대체전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일부 항공기에 비행자료의 보존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행자료를 지상에 있는 저장장치에 무선으로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향후 이를 국내 모든 여객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보조동력장치 뿐만 아니라 대체전원 장치까지 의무적으로 설치·구축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고, 항 공안전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록의 유지와 유실 방지 고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사고의 신속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52조의2 신설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항공기의 비행자료 및 조종실음성 기록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2조의2(보조동력장치등의 설치·구축 등)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항 공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 및 시스템(이하 "보조동력장치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1. 보조동력장치: 항공기의 동력발생장치 손상으로 항공기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적으로 동력을 발생시 키는 장치
 - 2. 대체전원장치: 항공기의 전원이 손실되는 경우 조종실의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가 일정 시간 동안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별도의 전원장치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동력장치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유지·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 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조동력장치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여야할 항공기, 설치·구축 기준 및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91조제1항에 제13호의2 및 제1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5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구축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13의3. 제5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동력장치등의 설치·구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동력장치등이 설치·구축되지 않은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 는 자는 제5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3년 이내에 해당 항공 기에 보조동력장치등을 설치·구축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는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u> <신 설></u>	3의2. 항공기의 비행자료 및 조
	종실음성 기록 유지와 유실
	방지를 위한 장치・시스템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52조의2(보조동력장치등의 설
	<u>치·구축 등) ① 항공운송사업</u>
	자는 항공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치 및 시스템(이하
	"보조동력장치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구축하여 운용하여
	<u>야 한다.</u>
	1. 보조동력장치: 항공기의 동
	럭발생장치 손상으로 항공기
	에 필요한 전력 공급이 이루
	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적
	으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2. 대체전원장치: 항공기의 전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원이 손실되는 경우 조종실의 음성을 기록하는 장치가 일정 시간 동안 작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전력을 공급 하는 별도의 전원장치

-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동력장치등이 정상적 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항상 유지·점검하여야 하며, 정상적 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보조 동력장치등을 설치하거나 구축 하여야 할 항공기, 설치·구축 기준 및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 다.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① ------

만, 제1호, 제39호, 제39호의2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u><신 설></u>

<신 설>

14. ~ 49. (생략) ② (생략) ______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제52조의2제1항 및 제3 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보조 동력장치등을 설치하거나 구 축하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 니한 경우

13의3. 제52조의2제2항을 위반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 니한 경우

14. ~ 4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